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99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남인순・이병진・서미화

이수진 • 문진석 • 안태준

백혜련 • 김영환 • 박희승

전진숙 · 김남희 · 김 윤

민병덕 · 최기상 · 김원이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,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.

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,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,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및 단서 중 "7일"을 각각 "14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숙려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아동의 보호조치) ① 제9	제12조(아동의 보호조치) ①
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	
산한 날부터 <u>7일</u> 이상 그 아동	14일
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	
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	
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	
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	
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	
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	
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	
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・군	
수・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	
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	
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	
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	
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 다만,	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	
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<u>7일</u>	14일
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	
도할 수 있다.	,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